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024.09.26

1.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고시 행정예고

지난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내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분산특구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분산에너지법 제43조).

이러한 분산특구 내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본건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본건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본건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본건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분산에너지사업자 (분산에너지법 제2조 제3호)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 이하 1호, 2호를 총칭하여 “사업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공급 대상 전력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신이 설치하거나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 가능
전력공급책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p>부족발전량 거래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p>	<p><u>할 수 없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 전량을 공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책임공급비율(전기사용자의 월간 전력사용량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해 사업자에게 초과요금 부과 가능함
<p>초과발전량 거래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가능 • 발전량의 30% 이상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력량 정산금 차감 가능
<p>계약기간 및 전력거래대금 (제6조 제3항,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연 단위로 계약 체결 필요 (구체적인 기간은 합의 가능) • 전력거래대금 = 시간대별 공급량 * 거래단가 (월 단위로 산정)
<p>송배전망 이용 방안 (제5조 제2항, 제3항,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사용 (자가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은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거래수수료를 산정해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음 • 송배전설비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한전에게 증설공사를 신청해야 함 (직접 증설 불가, 전기사용자의 직접 신청 불가)
<p>그 외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변경)시 사전신고의무(제10조): 직접거래계약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 최초 전력공급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배전사업자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해지시 사전통보의무(제11조): 계약의 합의해지시 3개월 전까지 배전사업자에게 해지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9조), 해지 사유(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시사점

(1) 본건 고시 제정안은 직접거래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기간, 거래대금 산정방식 등 계약내용의 큰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월간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책임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족전력량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부족분을 보완공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일반 전기요금에 더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자의 전체 발전량 중 30% 이상이 남아 이를 전력시장에서 혹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30% 초과분에 대해 전력량 정산금이 차감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과 사업자의 발전량 매칭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계약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본건 고시 제정안은 직접 전력거래시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며, 송배전망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기사용자를 대신하여 송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설비 공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분산특구 내에서 직접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 혹은 전기사용자가 직접 배전설비를 구축·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송배전망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전은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거래수수료를 산정

해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이러한 수수료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는 사업자로부터 분산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의무설치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직접 전력거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 내에서의 책임공급비율(70%)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역전기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외부거래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의 향후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5년 1분기 중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분산특구의 지정과 관련한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산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Korean Direct Power Transactions in Dispersed Energy Specialised Areas

관련구성원

이상현

변호사

02-316-4068

shlee@shinkim.com

정수용

변호사

02-316-4345

syju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02-316-1635

jwryu@shinkim.com

박소정

변호사

02-316-1809

sjepark@shinkim.com